

● 전국도서관대회 제1주제 발표

새圖書館法에 따른 公共圖書館의 제문제

조 원호

<국립중앙도서관열람과장>

1. 새 도서관법의 골격

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국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	
전반적인 영세성으로부터 탈피	국가 정보자원의 총력화
각종·각급 도서관의 진흥	전국 도서관의 조직화
도서관의 개념과 역할의 변화 및 그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여러 규정	문현정보 유통의 체계화 및 처리기법의 표준화와 경영의 합리화 등을 꾀하려는 여러 규정
(1)목적 (2)정의 (3)도서관의 종류 (6)도서관의 시설·자료 (7)사서직원등 (8)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작 (9)도서관별전위원회 (10)~(11)도서관 진흥기금 (12)조세감면 (15)~(18)국립중앙도서관 (20)공공도서관-업무 (22)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(23)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	(1)(2)(9)(16)-①- 2 및 4(16)-② (17)자료의 제공 및 납본 (18)국제표준자료번호 (33)-4(38)-② (41)~(45)도서관 정보협력망

운영위원회 (33)대학도서
관-업무 (36)학교도서관-
업무 (38)~(40)전문 및
특수도서관 (46)~별칙

2. 공공도서관 관련 주요 사항

- 통합법 형태
- “국립중앙도서관”규정 별도
- 정의·업무: 정보봉사 기능 강화, 레크레이션 기능 약화
- 설립자 확대: 단체·개인
- 공립공공도서관의 설치·육성: 강행 규정화
-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재원: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명시
- 국고보조금 범위: 자료구입·운영비까지 확대
- 관장: 관련규정 입법화
- 도서관 운영위원회: 설치규정 명문화
-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도·감독등: 현실화
- 사용료 개념의 정리: 사용료·입관료
- “도서관정보협력망”상의 역할: 지역대표관
- 각종기준의 개정

3. 주요 현안들과 새 법의 태도

현 안	문 제 의 식	새법의 내용
○ 입법 목적 의 구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력의 실질적·효율적 수행 • 구체적인 법 적용 	제1조
○ 정부 조직 내의 도서 관정책 전 담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서관 발전의 기본조건 • 법의 실효성 보장 및 미비점 보완 	제9조 제11조 제15조 제47조 제5항
○ 정책자문 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적 조언 • 실질적 기능 발휘 	제9조 ※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0조
○ 사용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념의 정리—세분화 • 공립공공도서관의 “입관료” 폐지 	
○ 도서관 협 력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서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상호 협력의 극대화 • 실현 가능한 구체적 법제 	제41조~제45조
○ 운영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담 주체의 명시—목적세 논의 • 국고보조의 강화 • 예산 영세성의 탈피 	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시행령 제13조
○ 인력 구조 개선 및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성 제고—관장 전문직 구성 비 강화 • 정원 확충 	제23조 제1항 제7조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와 부칙 제4조
○ 운영 지원 기구	•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	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22조~제24조

현 안	문 제 의 식	새법의 내용
○ 설치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치 및 육성의 의무 규정화 	제21조 제1항
○ 지도·감독 체계	• 일원화	제24조~제29조
○ 각종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료기준 강화 • 시설기준 강화 • 봉사기준 제정 	제6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과 부칙 제10조
○ 자료의 폐 기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서관 자료 특유의 재적·폐기·이관 등의 제도화 	제8조 시행령 제6조

4. 3대 당면과제

○ 운영 재원의 문제

- 예전되는 과도기적 어려움의 극복
- 적정 규모의 국고보조 확보 노력
- 진흥기금 조성 협력
- 운영위원회의 활성화
- 재정의 절대적인 영세성으로부터 탈피

○ 인력의 합리화=전문직 유인체제 확립

- 사서직급의 상향 조정: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관계 직제
- 정원 확충: 봉사대상인구와 자료 및 이용자 비례제에 의한 적정수준
- 전문직 구성비 강화: 60% 이상의 수준

○ 협력체제 내에서의 역할 강화

- 지역대표관—지방대표관
- 자체 능력의 신장
- 업무전산화의 추진
- 협력의지의 강화